# 뉴욕시 교육청 로고

# 2024-2025 학년도

학부모 또는 보호자님께:

1973년 재활법 504 조항(연방법) 및 [교육감 규정 A-710](https://www.schools.nyc.gov/docs/default-source/default-document-library/a-710-korean.pdf)에 따라, 자녀분은 학교와 기타 교육청 주관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보건 서비스 및/또는 기타 적절한 조정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이들 서비스는 특수 보건 필요가 있는 학생이 장애가 없는 또래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예: 의료적 질환이 있는 학생은 의료 서비스 제공처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서 투약 받을 수 있으며 보거나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교사 또는 칠판 가까이 앉을 수 있습니다.

# 자녀가 서비스 및/또는 조정 대상인지 알아보는 방법:

1.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:
	* 자녀의 학교 504 코디네이터 또는 학교장, 또는
	* 교육청 섹션 504 프로그램 매니저, 이메일: 504Questions@schools.nyc.gov.

자녀의 이름, 학교, 학급 및 자녀의 상태와 필요한 도움의 종류를 알려주십시오.

1. 자녀의 학교 504 코디네이터 또는 학교장은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/또는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릴 것입니다.
2. 신청 후, 학교에서 자녀분의 서비스 및/또는 조정 수혜자격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검토할 것입니다. 작성하신 504 요청 양식을 접수한 후 5 수업일 이내에, 자녀의 필요를 논의하기 위한 학교 504 팀 미팅에 여러분을 초대한다는 통보를 받으실 것입니다. 요청하신 서비스에 따라, 해당 미팅은 반드시 504 요청 양식을 접수한 날짜로부터 15일 또는 30일 수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

첨부: [504 조정: 학생 및 가족 안내서](https://www.schools.nyc.gov/docs/default-source/default-document-library/504-accommodations-student-and-family-guide-korean.pdf) 및 [섹션 504 비-차별 조항 공지](https://www.schools.nyc.gov/docs/default-source/default-document-library/notice-of-non-discrimination-under-504-korean.pdf)에서 자녀의 권리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교육감 규정 A-710 및 관련 양식들과 함께 이들 자료를 확인하십시오: <https://www.schools.nyc.gov/school-life/health-and-wellness/504-accommodations>.

질문이 있으시거나 자녀의 교육청 또는 비-교육청 제공 특별활동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이 있으시면, 504 코디네이터이나 학교장, 또는 다음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십시오: 504Questions@schools.nyc.gov.

안녕히 계십시오.

504 Coordinator signature Principal signature

504 코디네이터 학교장